

## 부록

# 부 록

## ○ 설문조사지

서울시 악취배출원 적정관리를 위한 설문조사
<p>안녕하십니까?</p> <p>서울연구원에서는 현재 「서울시 악취배출원 적정관리 방안」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</p> <p>이 설문을 통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관계자, 주변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악취 실태를 파악하고, 향후 악취배출원의 적정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소중한 활용하고자 합니다. 본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만 사용되며, 통계법(제33조)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.</p> <p>귀하의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. 이 설문지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2014. 3.</p> <p>서울연구원      조용모 (choym@si.re.kr) 홍미진 (pooh10221@si.re.kr)</p> <p>시민환경연구소   박은영 (eypark@kfem.or.kr)</p>
<p>○ 조사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그룹 1. 대상 사업장</li><li>• 그룹 2. 주변 시민</li></ul>
<p>○ 조사내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I. 사업주 면담조사</li><li>II. 주변 시민들이 체감하는 악취정도</li></ol>

II. 사업장 면담조사 ※ 아래 해당란에 “✓”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1] 기초정보

1. 귀하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?

- 사업주       종사자       기타 (            )

2.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?

- 남               여

3.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?

- 20대           30대           40대           50대           60대 이상

4. 귀하의 사업장의 업종은 무엇입니까? (중복응답 가능)

- 음식업(직화구이)     세탁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도장시설  
 인쇄시설               섬유 및 염색업           아크릴 제조               기타

5. 귀하의 사업장은 배출허용물질 신고대상의 사업장(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)입니까?

- 그렇다           아니다

구분	시설규모 기준	해당여부
거,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	용적 합계가 5㎡ 이상인 세모·표백·정련·자숙·염색·다림질(텐터(tenter))·탈수·건조 또는 염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	
서,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	작업장 면적이 150㎡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·인쇄·건조·코팅·압출·점착(접합) 또는 제책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. 다만,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	
도, 도로·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	1) 용적이 1㎡ 이상인 반응, 흡수, 응축, 정제(분리·증류·추출·여과), 농축,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)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㎡ 이상인 연소(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), 용융·용해, 소성, 가열,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	
조, 조립금속제품·기계·기기·장비·운송장비·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(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은 제외한다)	1) 용적이 5㎡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) 용적이 1㎡ 이상인 도금, 열처리, 탈지, 산·알칼리처리 및 화성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)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㎡ 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) 시간당 처리능력이 0.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㎡ 이상인 주물사처리공정(코어 제조공정을 포함한다)을 포함하는 시설	
토, 산업용 세탁시설	작업장 면적이 330㎡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	

비고  
 1.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.  
 2. 사무실·창고·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·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.  
 3.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저장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6. 귀하의 사업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?**

- 주거밀집지역       상업지역       복합지역(주거지+상업지)       기타  
( )

**7. 귀하 사업장의 작업형태는 어떠한가?**

- 간헐적 작업     종일 작업  
 간헐적 작업 + 종일 작업 (= 간헐적 작업 \_\_\_\_\_ (%) : 종일 작업 \_\_\_\_\_ (%)) : 합  
이 100% 되도록)

**8. 귀하 사업장의 주 작업시간대는 어떠한가?**

- 구체적인 시간대를 기입 \_\_\_\_\_

**9. 귀하 사업장의 종사자수는 몇명입니까?**

- 1~4명       5~9명       10~19명       20~49명       50명 이상

**[2] 설문 내용**

**1. 귀하의 사업장에서 최근 3년내 악취 민원(신고)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?**

- ① 예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아니오.

**2.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과거 3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,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악취 관련 민원(신고)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편입니까? 아니면 감소하는 편입니까?**

- ① 많이 증가하였다    ② 다소 증가하였다    ③ 비슷하다  
④ 다소 감소하였다    ⑤ 많이 감소하였다    ⑥ 잘 모르겠다

**3. 귀하의 사업장 악취물질은 어떤 물질(종류)인지 알고 있습니까? (중복응답 가능)**

- ① 황화합물(양파, 양배추 썩는 냄새 또는 계란 썩는 냄새)  
② 질소화합물(분뇨 냄새 또는 생선 썩는 냄새)  
③ 알데히드류(자극적이고 새콤 또는 타는 듯한 냄새)  
④ 탄화수소류(자극적인 시너 냄새 또는 가솔린 냄새)  
⑤ 지방산류(자극적인 신 냄새 또는 땀 냄새)  
⑥ 할로겐원소(자극적인 냄새)    ⑦ 기타( 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⑧ 잘 모르겠다.

**4. 사업장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?**

- ① 거의 없다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있으나 참을만 하다.  
③ 약간 고통스럽다.              ④ 매우 고통스럽다.

**5. 최근 3년내 사업장의 악취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?**

- ① 있다. (5-1번 문항으로) 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없다. (5-2 문항으로)

**5-1. (5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)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적이 있다면, 어떤 시설을 설치하였습니까?**

구체적으로 기술 \_\_\_\_\_  
(☞ 응답 후 문6번으로)

**5-2. (5번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) 그러면 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가?**

- ①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 
②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 
③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 
④ 기타(구체적으로 서술) \_\_\_\_\_

**6. 최근 3년내 사업장의 악취저감을 위해 작업방법을 개선한 적이 있습니까?**

- ① 있다. (6-1 문항으로) 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없다. (6-2 문항으로)

**6-1. (6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) 작업방법을 개선한 적이 있다면, 어떤 방법을 실시하였습니까?**

구체적으로 기술 \_\_\_\_\_  
(☞ 응답 후 문7번으로)

**6-2. (6번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) 그러면 왜 작업 방법을 개선하지 않았는가?**

- ① 개선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 
② 장소가 협소해서  
③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 
④ 기타(구체적으로 서술) \_\_\_\_\_

7. 서울시나 구청에서 비용 지원이 된다면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?

- ① 매우 있다. ② 다소 있다. ③ 별로 없다. ④ 전혀 없다. ⑤ 잘 모르겠다.

8. 악취방지시설 설치의 지원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까?

- ① 시설비용의 50~70% ② 시설비용의 50% 내외 ③ 시설비용의 20~40%

9.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(연 2회이상 민원 포함)하면 악취관리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?

- ① 매우 필요하다. ② 다소 필요하다. ③ 별로 필요없다.  
④ 전혀 필요없다. ⑤ 잘 모르겠다.

※ 자율관리협약 제도란 : 사업주가 스스로 관리하여 서울시(구청)의 단속 등 규제를 면제받는 제도임.

10. 환경오염분야의 「자율관리협약 제도」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?

- ① 자세히 알고 있다. ②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.  
③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른다. ④ 전혀 모른다.

11. 「자율관리협약 제도」를 도입하면 적극 활용할 의사가 있습니까?

- ① 매우 있다. ② 다소 있다. ③ 별로 없다. ④ 전혀 없다. ⑤ 잘 모르겠다.

### Ⅲ. 주변 시민들

#### 1. 귀하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?

- 지역주민      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시민       기타 (            )

#### 2. 귀하의 현재 거주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? (            )년 동안 거주

#### 3. 귀하의 현재 거주형태는 무엇입니까?

- 아파트       빌라/연립       단독/다가구       기타(            )

#### 4.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?

- 남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여

#### 5.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?

- 20대       30대       40대       50대       60대 이상

#### 6. 귀하의 생활권(주거지 및 주거지 근처)에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?

- 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아니오

#### 7. 귀하가 느낀 생활악취는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(발생원이 어디인지) 아십니까?

- 사업장(음식점, 세탁소, 인쇄소, 기타 등)주변을 지나갈 때 느끼는 악취  
 하수구 주변 악취  
 기타 (구체적으로 기술 \_\_\_\_\_)

**8. 약취를 느꼈을 때, 약취 강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?**

- 냄새를 느낄 수 없다.
-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으나 약한 냄새가 난다.
-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으나 복합적인 냄새가 난다.
-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없고, 혐오스럽거나 역겨운 냄새가 난다.
- 강한 혐오감을 느낀다.
- 기타 ( )

**9. 약취가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? (구분별 체크)**

- 계절별 ( 봄  여름  가을  겨울)
- 시간대별 ( 아침  오전  오후  저녁  밤)
- 날씨별 ( 맑은 날씨  흐린 날씨  비나 눈이 올 때  기타 ( )

**10. 일상생활에서 약취로 인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?**

- 거의 없다.  있으나 참을 만하다.
- 약간 고통스럽다.  고통스럽다.

**7. 약취를 체감하였을 시 신고(민원)을 어느 정도 고려하셨습니다?**

-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. 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.
- 다소 고려하였다.  심각하게 고려하였다.

**8. 그러면, 실제로 약취를 체감하였을 시 신고(민원)을 한 적이 있습니까?**

- 신고한 적이 없다.  신고한 적은 없으나 주변사람에게 말(호소)한 적이 있다.
- 신고한 적이 있다.  2회 이상 신고한 적이 있다.

**9. 악취 신고(민원) 후 악취가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.**

-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.      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.  
 다소 개선되었다.       매우 개선되었다.       잘 모르겠다.

**10. 생활권 주변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(연 2회이상 민원 포함)하면 악취 관리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?**

-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.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. ③ 보통이다. ④ 다소 필요하다.  
⑤ 매우 필요하다.

**※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**